

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가.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 및 지원 범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
- 나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·증설 투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구미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임대료 지원 기간 명시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예외사항 규정 (안 제26조)
- 나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이 신·증설 투자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6조의2)
- 다.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삭제
- 라.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 (안 제29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,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시행령」 제2조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4. 5. ~ 4. 10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신·증설 투자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,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,
 - 유망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